

<전 매체> 2022년 5월 17일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중소벤처기업부

# 보도참고자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문의 : 중소기업부	소상공인손실보상과	과장 정의경(044-204-7821)	이호중 서기관(7826)
과학기술정보통신부	사이버침해대응과	과장 설재진(044-202-6460)	김승열 사무관(6461)
경찰청	경제범죄수사과	총경 김종민(02-3150-2037)	경정 유지훈(2763)
한국인터넷진흥원	탐지대응팀	팀장 김은성(02-405-5363)	-

## 소상공인 손실보상,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·전화 주의

-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·전화가 증가하여 주의 필요
-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,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고·시행 예정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, 중기부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과기정통부), 경찰청(청장 김창룡),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원태, 이하 KISA)은 소상공인 손실보상,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.

현재,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,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(사이트)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·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.

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·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·홍보하고, 사기문자·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·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서기관(☎ 044-204-7826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금년도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지원 안내 공고

[Web발신]  
(광고)대상자알림

안녕하세요. 고객님  
귀하께서는 『정책지원 매출 감소별 손실보상  
지원금 및 손실보전금』 지급 확정 대상자로  
선정되어 마감 전 재안내드립니다.

본 문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 
정책지원자금 이용자 역시 추가 신청 가능한  
사업으로 미신청 대상자에게 재안내 목적으로  
발송되었으며, 문자 수신 대상자께서는 이번  
지원된 예산 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 
**22.05.18(수) 16시까지** 신청 마감함을  
알려드립니다.

■지원대상

- 소상공인 약 332만명
- 일반근로자,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등.
- 기존 재난지원 신청자 약 250만명(추가 지원)
- 신규 신청자 약 120만명

■지원정책 추가사항 안내.

- 지원혜택: 무담보, 저금리, 장기상환, 보증지원,  
신속지급.
- 지원자금: 경영안정, 일상회복, 고용안정,

- 용도별 최대 5천만 원까지
- 신용점수·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 
지급
- 임차료, 임금체불(급여지급), 긴급생계, 전·월세  
보증금, 자녀 학자금, 의료, 장례 등

■온라인(전자 약정) 신청 안내.

- 신청기한: **2022년 5월 18일(수) 16시까지**
- 필요서류: 무서류 접수(최종 가결 시 필요서류  
요청)
- \* 예산 초과 및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건에  
대해서는 부지급 처리.

【유의사항】

- ①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 
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,  
유관기관 등에 통보됩니다.
- ② 금융사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■금융상담센터

- 상담전화: **1533-1478**
- 상담시간: **09:00~16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**
- \*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 
정책자금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 
안내드립니다.

무료거부**080-156-7160**

□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자

[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결과 안내]

[Web 발신]

귀 사업장이 신청한 확인보상 결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확인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,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신청결과 조회방법 :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손실보상” 검색 또는 주소창에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를 입력하여 접속 → “신청결과 확인”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결과 확인
- 문의전화 :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(1533-3300)
- ※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및 관할 시·군·구청 전담창구를 통해 보상금 결과 확인 후, 세부적인 보상금 산출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신청결과 안내]

[Web 발신]

귀 사업장이 신청한 확인요청 결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또는 시·군·구청 전담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확인요청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을 통한 결과 확인에 동의하거나 서면통지(시스템을 통한 결과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)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신청결과 상세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 : 포털 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손실보상” 검색 또는 주소창에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를 입력하여 접속 → “신청결과 확인”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→ 통지방식 동의 여부 선택 → 결과 확인(시스템 상 결과 동의 시만 바로 가능) → 이의신청
- 문의전화 :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(1533-3300)

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

